

2023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2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3. 안전관리 성과 및 과제	7
II.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0
1. 재난	10
① 자연재난	10
② 사회재난	14
2. 안전사고	16
① 대학 안전사고	1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9
③ 연구실사고	21
3. 감염병 확산	25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5
4. 범죄	30
① 일반범죄	30
② 성범죄	31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35
① 산업재해	35
② 중대재해	38
6. 기타	45
① 사이버 위기	45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47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1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58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60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61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62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 수립 분야

- **(위험요인별 수립)** 재난, 대학안전사고, 교육시설안전사고, 연구실사고, 감염병, 성희롱, 성폭력,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이버위기 등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전 화	1899-3700	FAX	031-8021-7127	홈페이지	www.dankook.ac.kr
총장	김수복	총괄안전 관리 책임자(관)		김수복 (직책 : 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석·박사통합)		
	11,916	829	655(175)	13,575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360	501	161	-	-	1022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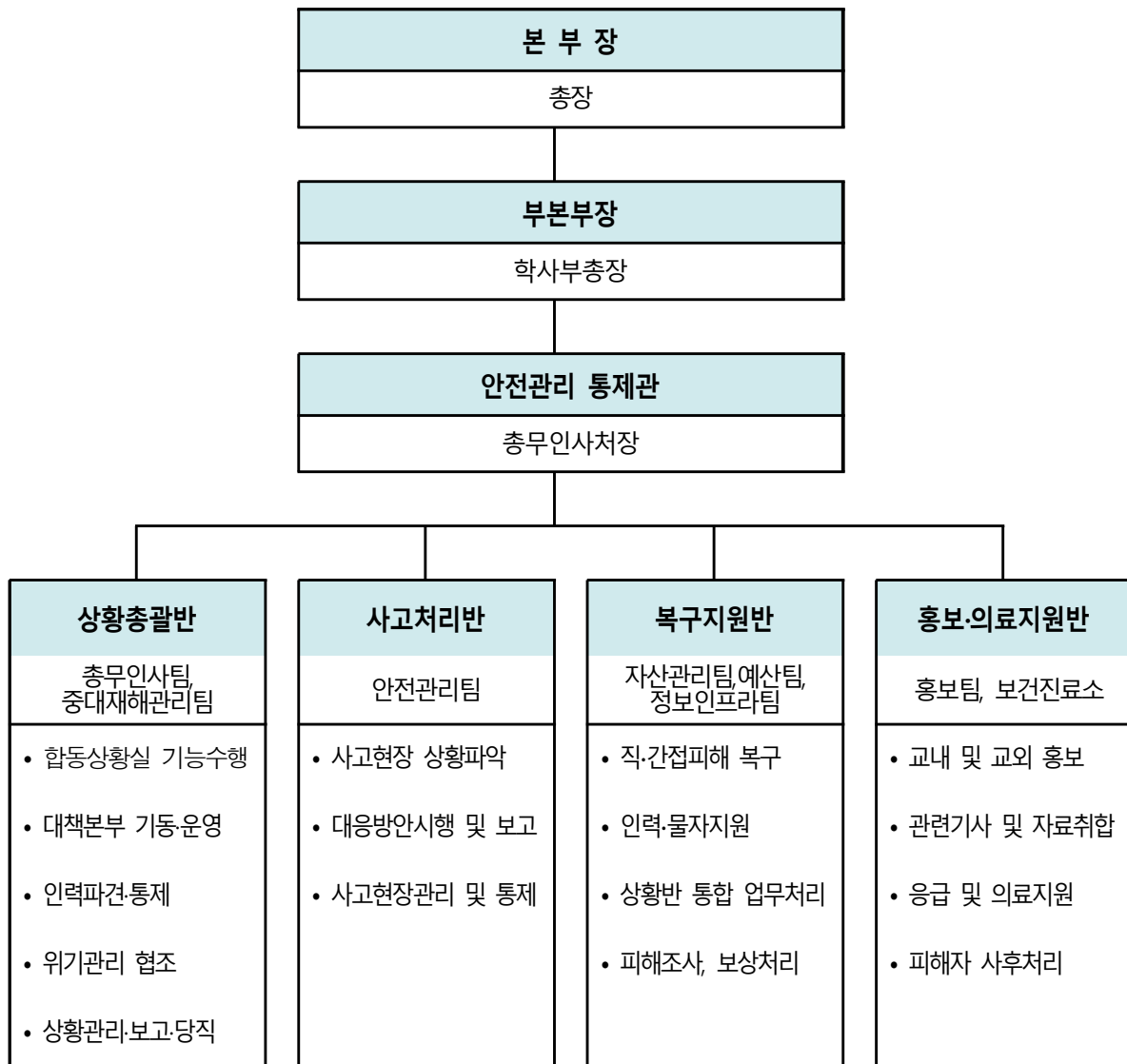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 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관리팀	관련부서
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팀	총무인사팀
	사회재난	안전관리팀	총무인사팀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팀, 학사팀	대학진료소
	교육시설안전사고	안전관리팀	총무인사팀
	연구실안전사고	안전관리팀	각대학(원)교학행정팀
감염병	코로나19	총무인사팀	대학진료소
범죄	일반범죄	총무인사팀	학생팀
	성범죄	인권센터	총무인사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관리팀	안전관리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관리팀	안전관리팀
기타 비상사태	사이버 위기	정보인프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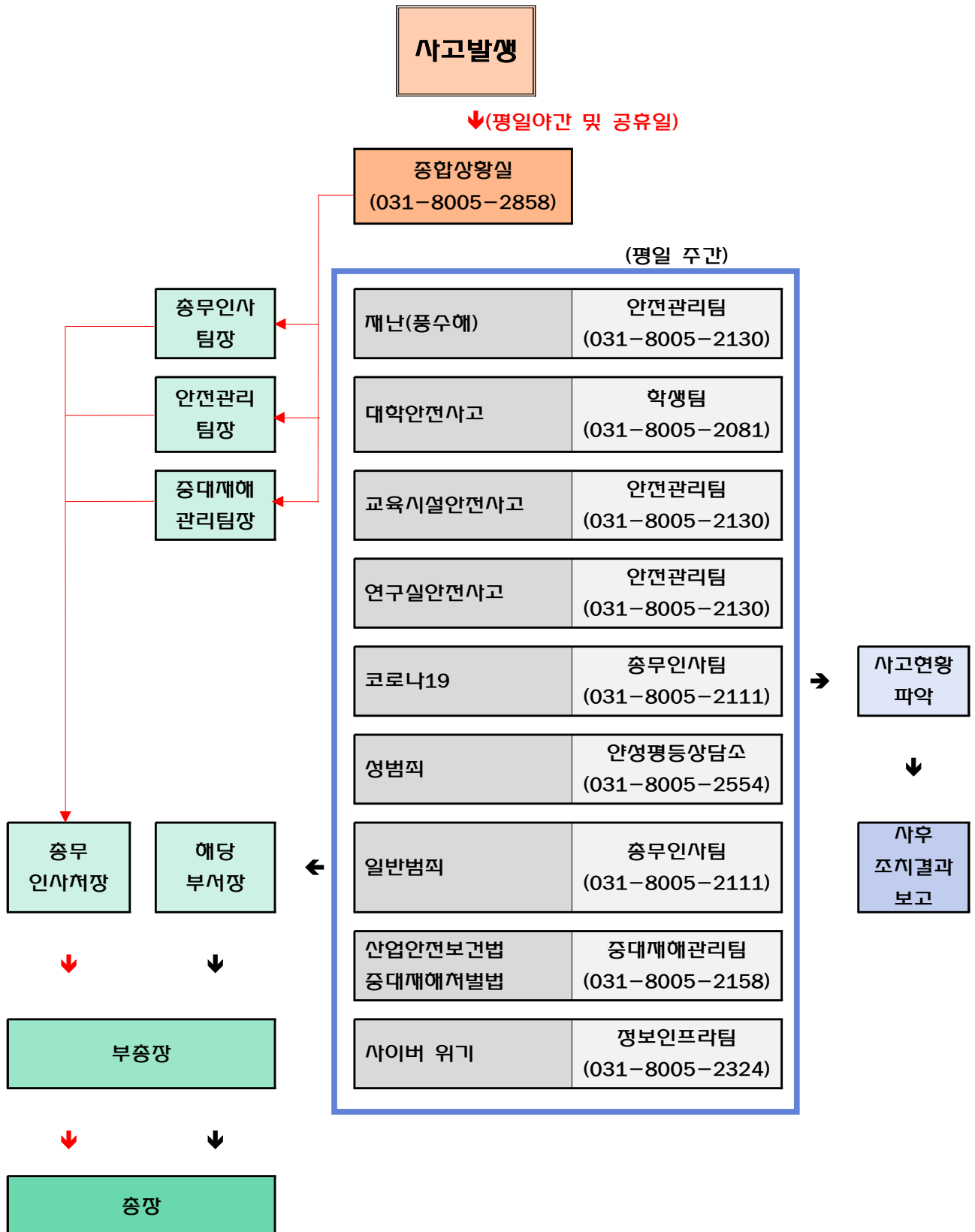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구 분	사고유형	담당부서	전화번호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사회재난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팀	031-8005-2081
	교육시설안전사고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연구실안전사고	안전관리팀	031-8005-2130
감염병	코로나19	총무인사팀	031-8005-2111
범죄	일반범죄	총무인사팀	031-8005-2111
	성범죄	인권센터	031-8005-2554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기타 비상사태	사이버 위기	정보인프라팀	031-8005-2324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상황보고 체계



3. 안전관리 성과 및 과제

□ 추진성과

○ 연구실 안전관리 실적

-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탄력적 운영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 선제적 대응
- 연구실 요청사항 적극적 대처
-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직 구성·운영

- 대응조직 : 일상회복준비위원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 사항

- 각 건물 주출입구(1곳)을 제외한 출입구 폐쇄
- 주출입구 출입자 온도체크 및 방문자 위한 문진표 작성
- 전직원 출근시 자가문진표 작성 제출
- 전교직원 출장자제 및 집단행사 금지

○ 기타 감염병 보고·대응체계 유지 및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 교내 각 건물 주요 출입구 손잡이 매시간 소독 및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 학교 홈페이지 팝업 및 링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공지사항 안내
- 단과대학 감염성 질환 관리자 교육 및 결핵 밀접접촉자 교육 실시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 강화

- 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미조치 기관 관리 강화
 -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필수 조치사항 점검
 - 학내 기관 정보자산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학내 정보화기기 비밀번호 취약점 점검 실시
- 사용자 PC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 PC 내 개인정보파일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제재 강화
 - 개인정보 보유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인권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조사 강화
 - 성/안전침해 접수창구 설치 및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 상담 진행
 - 피해자 보호·공동체 회복 조치 및 가해자 개선 교육 강화
 -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을 심리상담 강화
 - 인권센터 사건처리절차도 등 이용정보 가이드 개발·보급
- 인권/성평등 교육 심화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성관련 사건 피신고인의 재활방지교육 실시
 - 교육 유인을 위한 캠페인·참여형 교육 확대
-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수시
 - 공사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
 - 계절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취약부위 점검 및 개선
-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재해 취약시기 안전점검 실시
 - 3회 실시(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
 - 열화상카메라 : 39대
 - 체온계 : 307개
 - 자가진단키트 : 6,000개
 - 칸막이(비말 가림막) : 10,505개
 - 손소독제 : 848개
 - 마스크 : 14,558개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1. 03. 11.(목) 15:30~17:50
 - 대상 : 교직원
 - 내용 : 소방훈련 외 응급처치교육
 - 생활관 소방합동훈련 :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교육으로 대체

□ 과제 및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 과제

- 지속적인 안전관리비 확보 및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개별연구실) 인증 추진-과기부인증

○ 감염병 보고·대응체계 유지 철저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높음
-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교내 대응 매뉴얼에 따른 감염병 발생감시 지속 및 보고 철저
- 질병관리청, 관할구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코로나19로 관심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핵 등 기타 감염병 관리 철저

○ 사이버 보안 위협 심화

- 최근 ICT 기술 변화 등 지능화·첨단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원격보안 접속프로그램, 이메일, 가상사설망(VPN) 솔루션 취약점 악용한 공격 증가
- 생활전반으로 보편화된 다양한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학내 사건 처리 및 예방 대책 방향 설정

-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원 기반 강화
-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외국어 서식 및 안내문 마련 추진
- 대학 본부와외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학내 사건 처리 프로세스 보완 및 신뢰기반 구축 필요
- 인권/성평등 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증진 독려
- 이수 독려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 지진 등 대형 재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 내진보강, 시설안전점검 등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실제 대피 훈련 시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1. 재난

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1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19.4	0	19.4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19.4	19.4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사상자 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시설개보수 예산으로 사용(필요시 추가예산 편성)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태풍 링링 피해복구 사업	19.4	-	-	-	
계	19.4	-	-	-	

□ 폭설시 대응

제설범위 및 담당구역별 책임자 현황

1. 제설범위(담당구역)



2. 담당구역별 책임자

구분	책 임 자 소 속	담당구역	제 설 범 위	해 당 부 서	제설장비 보관장소 (각 건물 주출입구)
1구역	총무인사팀	범정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범정관↔도서관 중앙 계단 - 범정관 양측 인도 및 들샘길	총무인사팀, 안전관리팀, 재무회계1팀, 자산관리1팀, 대외협력1팀, 홍보팀, 뉴미디어운영팀, 미래교육팀, 교육평가 성과센터, 첨단교육센터	범정관 앞 (경비실 방향)
2구역	전략기획팀	분수대	- 범정관↔분수대 중앙 계단 - 범정관↔분수대 양측 인도 - 분수대 주변 및 인도	전략기획팀, 평가혁신팀, 예산팀, 법무 감사팀, 정보기획팀, 정보인프라팀, 교무팀, 학사팀, 연구평가지원팀, CS경영팀	
3구역	학술정보지원팀	도서관	- 도서관↔혜당관 중앙 계단 - 출입구 및 주변인도	학술정보지원팀, 출판팀, 동양학연구원 대학생활상담센터, 인권센터, 교수학습 개발센터, BSM센터	도서관 3층 출입구
4구역	학생처 학생팀	혜당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혜당관 2층↔1층 외부 계단	학생팀, 장학팀, 취업진로1팀, 창업지원1팀, 글로벌창업혁신센터, 예비군훈련팀, 대학진료소, 단국미디어센터	혜당관 2층 우리은행 방향 출입구
5구역	SW융합대학 교학행정팀	소프트웨어 ICT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SW융합대학 교학행정팀, SW중심대학사업단, EduAI센터,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 ICT관 1층 출입구
6구역	미래교육지원1팀 사회과학대학 교학행정팀	미디어센터	- 출입구 및 주변인도	미래교육지원1팀, I-다산LINC+사업단 커뮤니케이션학부, 상담학과, 정보통계학과	

구분	책 임 자	담당구역	제 설 범 위	해 당 부 서	재설장비 보관장소 (각 건물 주출입구)
	소 속				
7구역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사범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사범관3층↔상경관3 층 연결 통로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교직지원팀 한문교육과, 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교직교육과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1팀	사범관 1층 출입구
8구역	경영경제대학·경영대 학원 교학행정팀	상경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상경관3층↔인문관3 층 연결 통로	경영경제대학 교학행정팀,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산업경영학과(야)	상경관 1층 출입구
9구역	문과대학 교학행정팀	인문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대학원동 주차장 입 구 인도	문과대학 교학행정팀,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문관 1층 출입구
10구역	대학원 교학처 교학 행정팀 법과대학 교학행정 팀	대학원동 법 학 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인문관 5층↔법학관1 층,3층 인도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행정법무대학원 교학행정팀 교육·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평생교육원 교학팀 법과대학 교학행정팀, 법학과	대학원동 3층 출입구
11구역	사범대학 교학행정 팀 음악·예술대학/문화예 술대학원 교학행정팀	체육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체육교육과, 공연영화학부	체육관 1층 출입구
12구역	음악·예술대학/문화예 술대학원 교학행정 팀	미술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음악·예술대학 교학행정팀, 도예과 디자인학부	미술관 2층 출입구
13구역	교사자료팀	단국역사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교사자료팀, 법인 사무처	단국역사관 2층 출입구
14구역	음악·예술대학/문화예 술대학원 교학행정팀	난파음악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 음악관↔콘서트홀 인도	음악·예술대학 교학행정팀, 음악학부	음악관 1층 출입구
15구역	생활관 행정팀 음악·예술대학/문화예 술대학원 교학행정팀	집현재 I 무용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생활관 행정팀, 무용과	집현재 I 출입구
16구역	학예연구실	박물관 연민기념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학예연구실	박물관 1층 출입구
17구역	공과대학·정보융합기 술·창업대학원 교학 행정팀	1,2,3공학관 종합실험동 메종트리앙글 르	- 출입구 및 주변인도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공학교육혁신 센터, 전자전기공학부, 고분자시스템 공학부, 응용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 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학부	제2공학관 3층 출입구
18구역	사회과학대학 교학행정팀	사회과학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사회과학대학 교학행정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사회과학관 1층 출입구
19구역	산학기획팀	글로벌산학 협력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문화예술대학원 교학행정팀	글로벌산학협 력관 1층 출입구
20구역	국제교육1팀	국 제 관	- 출입구 및 주변인도	국제교육1팀, 국제교류팀, 경영경제대 학 교학행정팀, 인재개발지원팀	국제관 1층 출입구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7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1	0.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27.7	5.5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소방시설물 정기점검 실시(년2회)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 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안전점검 년3회 실시(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소방시설물정밀점검	24	23	24	71	년2회
소방시설 개선 및보수 소화기 구입	17.8	26	20	63.8	
공조기 필터 세정	5	10.9	12	27.9	년2회
공조기 필터 구매	4.3	4.4	4.5	13.2	
계	51.1	64.3	60.5	175.9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팀	031-8005-2081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031-8005-2086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팀장	학사팀	031-8005-2051	협조부서
팀원	학사팀	031-8005-2057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죽전·천안캠퍼스 통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126	89	21	26	42	60.8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126	89	21	26	60.8
	계	126	89	21	26	60.8

□ 원인분석

○ 자체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였으나, 다시 대면 교육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차선도색 및 도로개보수공사	10	25		35	
대학현장실습안전공제	0.8	1		1.8	
계	10.8	26		36.8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년 3회 안전점검(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각건물 누수 방수공사	75	70		145	
교육시설 안전 인증		25		25	22~25년까지 연차별 추진 예정
기계설비성능점검		15.5	34.9	50.4	
계	75	110.5	34.9	220.4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3	
팀장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451	협조부서
팀장	SW융합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141	
팀장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781	
팀장	일반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031-8005-2202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죽전·천안캠퍼스 통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8	2	4	4	6	4.8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8	2	4	4	4.8
	계	8	2	4	4	4.8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단계별 대응계획

단 계	구 분	대응/조치사항
1단계	사고발생	▶ 실험실 사고 발생
2단계	사고전파	▶ 사고 내용을 담당부서에 신고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연구실책임자) ↓ (야간) 통합상황실 (주간) 안전관리 팀장 ↓ 총무인사처장 ↑ 안전관리 팀장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현장출동) → 부총장 → 총장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현장출동)
3단계	사고대응	▶ 사고실험실 주변통제 ▶ 사고관련 정보 수집 및 현장 상황 파악 ▶ 사고 및 부상자 관련 정보 수집 ▶ 교내 동원 가능한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히 조치 ▶ 총괄지휘는 총무인사처장이 하며 사고현장 지휘는 안전관리팀장이 한다. ▶ 사고피해 확대방지 조치는 연구실책임자가 실시한다. ▶ 주요 물품 및 문서, 장비의 분실사고 예방
4단계	사고수습	▶ 총무인사처장 지휘아래 안전관리팀장이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 중대사고의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며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조사는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등 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한다. ▶ 연구실책임자는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내용 전달 및 대응 ▶ 보험회사 및 관련기관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한다. ▶ 교학행정팀이 주관하여 안전관리팀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복구 활동을 전개한다.

□ 화학물질 유출시 대응계획

구 분	대응 / 조치사항
사고발생	- 실험실에서 다량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사고전파	- 화학물질 유출자 또는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와 교내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팀)에 사고 내용을 신고한다. (유출된 화학물질 정보를 상세히 설명) -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학진료소에 응급환자 발생 신고한다. - 심각한 부상일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에 앰블런스 구조 요청한다.
사고대응	- 창문을 모두 개방 하여 환기 시킨다. - 유출약품 독성, 인화성, 반응성 등 특성을 파악한다. - 화학약품이 옷이나 신발에 묻은 경우 신속히 탈의한다. - 화학물질이 몸에 튀었을 경우 비상사위기로 15분 이상 몸을 충분히 세척한다. -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비비지 말고 15분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 적절한 안전보호구(방독면, 내산장갑, 보안경 등)를 착용한다. - 흡착포를 덮어 주변으로의 확산을 막는다. - 유출된 물질이 산이나 알칼리일 경우 중화제를 사용 중화시킨다. - 바닥에 유출된 물질은 흡착포나 흡수제로 제거 처리한다. - 휘발성 액체 증기를 흡입 하였을 경우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옮기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사고수습	- 오염제거 과정에서 수집된 흡착포 등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 안전관리팀장은 사고현황(원인 및 피해정도)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총무인사처장에게 보고 한다. - 중대사고의 경우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며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누출사고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 및 전파하여 동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연구·실험실 사고시 비상연락처

구 분	연락처		구 분	연락처
통합 상황실(주/야)	8005-2858		화재신고	방재실 8005-2119
연구실안전(실험실사고)	8005-2133			소방서 119
실험실 폐기물 및 폐수	8005-2133		대학진료소 8005-2421	
승강기고장	8005-2135		분당 서울대병원(응급) 031-787-3036	
전기고장	구내	8005-2135	강남 병원(응급) 031-300-0119	
	한국전력공사	123		
가스누출	구내	8005-2138	용인 세브란스병원(응급) 031-331-8771	
	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연구실안전관리비	187.4	182.7	633	1,003.1	
계	187.4	182.7	633	1,003.1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대응조직 : 코로나19 일상회복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방역대책 총괄하여 수시 대응계획 수립 및 전파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 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게시판 공지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이동 경로 불명확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246	50	50	346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5	
팀장	학생팀	031-8005-2081	협조부서
팀원	학생팀	031-8005-2085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031-8005-2554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031-8005-2533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22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디지털 성폭력 증가)** 대학 내 화장실,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 학교 주변 공공장소, 등·하교 시 대중교통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법촬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성적인 함의가 담긴 콘텐츠(불법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공유 등 SNS 단체 대화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인 사이에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내용의 사진 및 영상물을 이별 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증가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1	3	1	1	1	1.4
	성폭력	6	7	2	2	6	4.6
	계	7	10	3	3	7	6
피해자 수	성희롱	1	3	1	1	1	1.4
	성폭력	6	7	2	2	6	4.6
	계	7	10	3	3	7	6

□ 원인분석

○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피해현황 결과

-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대학 내 전구성원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본교 직원 약 95%, 교원 약 87% 의 이수율은 보였지만 재학생(학부/대학원)의 경우 59%로 낮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추후 재학생의 성관련 사건 예방 및 성평등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가 범유행전염병임을 선언함에 따라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 진행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크고 작은 모임이 생략되면서 교내 학생들 간에 성관련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오는 3월 개강 이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할 계획이며, 교내 인권 서포터즈단의 활동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계획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폭력예방교육 실시)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 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통합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 방지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 가능하며, 통합교육 시간은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과 동일(공공기관 종사자 연 4시간 이상, 초등·대학생 연 2시간 이상 등)
- (교육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
- (성관련 사건 창구 운영)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퇴계기념중앙도서관 309-4호에 성/인권침해 접수 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성사건 및 인권 사건을 접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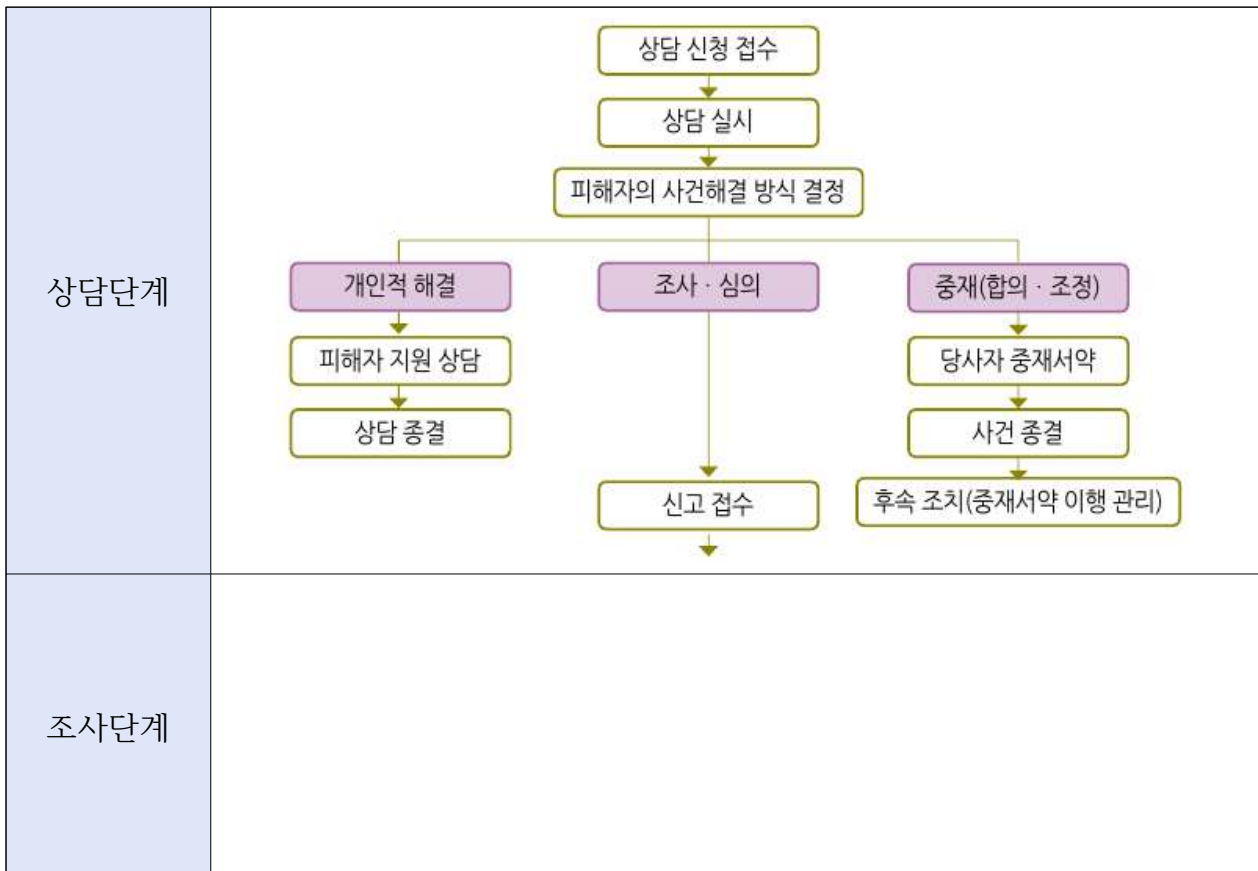
고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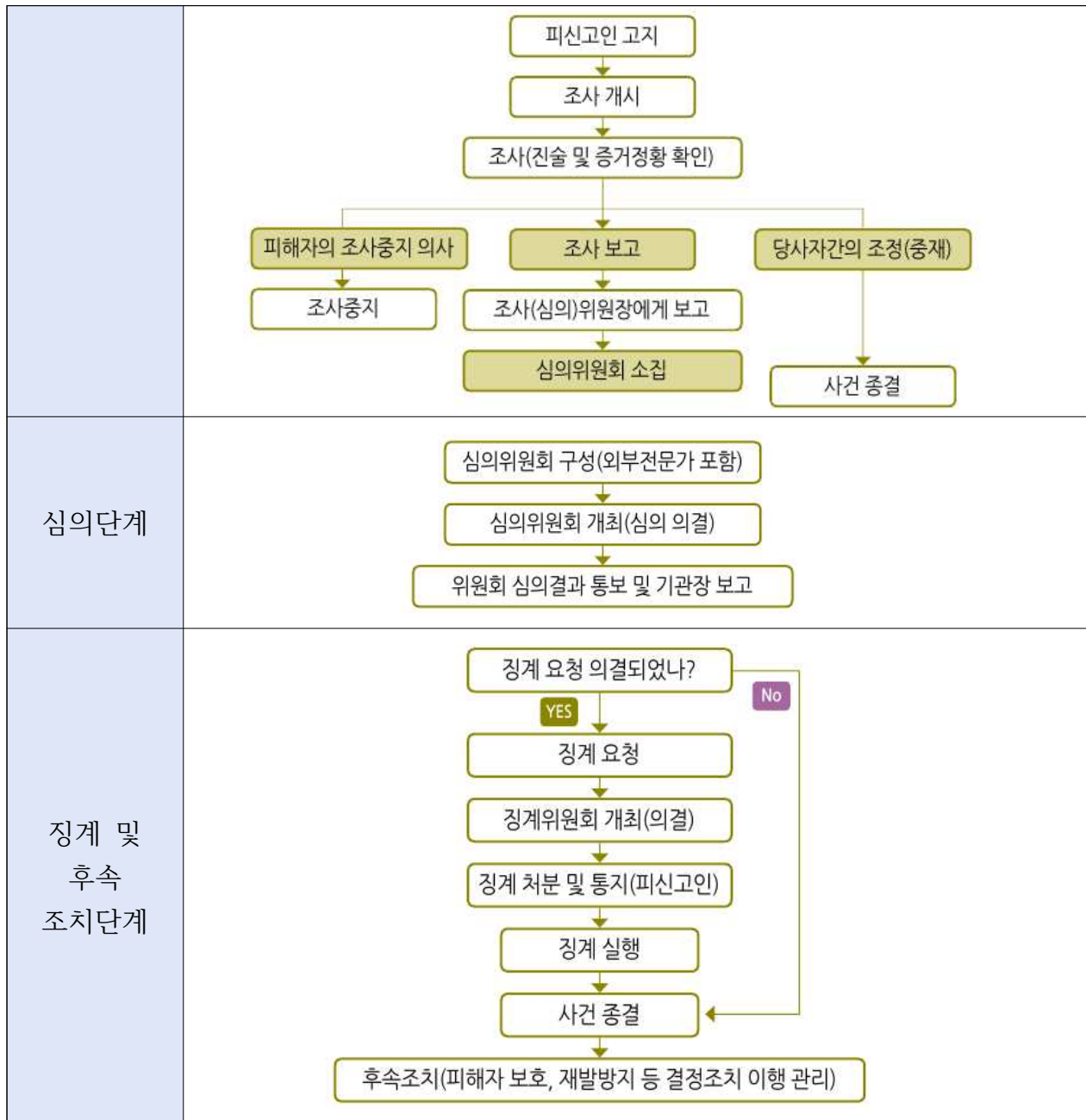
- (재발방지교육 실시) 성관련 사건 피신고인의 경우 교내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내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예방교육 특강	1.5	1.8	4	7.3	
예방교육(이러닝)	4.7	4.7	4.7	14.1	
계	6.2	6.5	8.7	21.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주관부서
팀원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31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대학 현업근로자 시설, 미화, 조리, 용역 등 업무상의 사유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도급공사의 경우 시스템비계 및 동바리 작업, 안전모 및 안전벨트 미착용, 사다리 사용 등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부상	0	0	0	0	
	계	0	0	0	0	

□ 원인분석

-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 발생건 수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도급공사)** 입찰공사의 경우 과업지시서상 안전보건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공사업체 선정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및 이행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전반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공사중에는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진행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장)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참조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이사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총무처장)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재해예방 안전관리비			20	20	
계	0	0	20	20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중대재해관리팀	안재범	031-8005-2158	주관부서
팀원	중대재해관리팀	박영빈	031-8005-2131	
팀장	안전관리팀	이태영	031-8005-2130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박영빈	031-8005-2131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건수가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 조치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 재해발생일로부터 <u>1개월 이내</u>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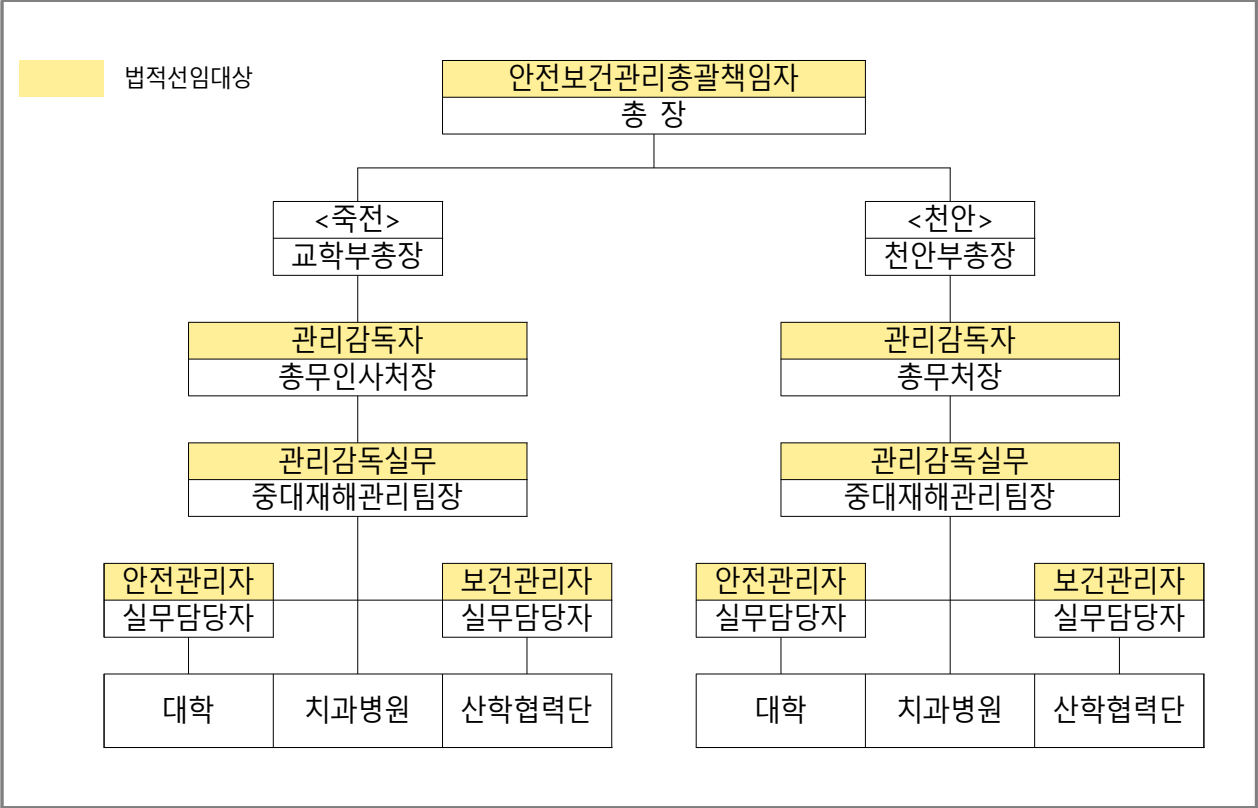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학총장에게 위임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6. 기타(사이버 위기)

☐ 위험요인

-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정보자산 손실
- 대규모 서비스업 공격,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위협받거나 중요 업무자료의 유출 및 국가기능이 지역적, 부분적으로 마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정보인프라팀	031-8005-2320	주관부서
팀원	정보인프라팀	031-8005-2324	

☐ 목표

- 교육부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와의 보안관제 협업 강화
-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체계 개선
- 교내 정보서비스 사용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 피해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	469	436	268	139	358	334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	0	0	0	0	0	0
계	469	436	268	139	358	334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육부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의 보안관제 서비스 범위는 죽전캠퍼스만 적용되어 있는 바,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천안캠퍼스까지 확대 실시하여 교육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한 침해사고 대응 활동을 강화
- 침해사고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절차 및 방법을 재검토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제고
- 교내 정보서비스 사용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프로그램 의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통제 방안 강구

※ 위기경보 단계

구분	판단기준	비고
정상	- 위험도가 낮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이버 위기 경보 이전 단계인 정상 수준으로 간주	-
관심	- 사이버 위기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사이버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 위험도가 높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 등 출현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해외에서 사이버 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 우려 - 사이버 위협 징후 탐지활동 강화 필요	징후 활동 감시
주의	- 사이버 위기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사이버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 일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 침해사고가 일부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단국대학교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태세 강화 필요	협조 체제 가동
경계	- 사이버 위기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 속도 및 경향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 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다수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마비 발생 - 사이버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 다수기관의 공조 대응 필요	대비 계획 점검
심각	- 사이버 위기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 속도 및 경향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비상사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 주요기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사용 불가능 -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필요	대응 태세 돌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보안관제 서비스	0	0	0	0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1.7	4.3	4.7	20.7	
계	11.7	4.3	4.7	20.7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배상책임보험	학생	
대학배상책임보험(단체상해보험)	교직원	
재산종합보험		교육시설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영업배상책임보험	2022-03-25 2023-03-25	2.8	28,088	78,378	42	34,264	-	-	신입생 OT, MT, 외국인학생 담보
2022	교직원단체상해보험	2022-08-31 2023-08-30	283	-	328,755	429	94,992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200,000	1,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사망,후유장해	200,000	200,000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사망,후유장해	200,000	200,000	
교직원단체상해보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100,000	
	질병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10,000	
	암 진단비		5,000	
	2대질병 의료실비		1,500	
			5,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재산종합 보험	2020-08-31 2021-08-30	88,646	231,166	88,646	-	-	-	-	
2021		2021-04-09 2022-04-08	97,670		97,670	-	-	-	-	
2022		2022-04-09 2023-04-08	106,793	208,589		106,793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재산종합보험	○ 자조물 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 (손해액의 10%한도) ○ 공공권면 채적용 ○ 일시적 철거비용 담보(동일구내 적용) ○ 소규모공사(10억원 한도) ○ 추가재산 담보(10억원 한도) ○ 소방, 긴급비용 담보(각 30억원 한도) ○ 특별비용 담보(30억원 한도) ○ 손해방지비용 공공기관조항 적용 ○ 화재대물 신채손해배상책임 담보 (종업원 부담보 조건)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담보 ○ 80% 실손보상 적용(건물에만 적용)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재조달가액기준 및 비례보상조항 적용 ○ 총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금액한도 ○ 자기부담금 : 한사고당 300,000원 (단, 컴퓨터, 모니터는 한사고당 100,000원 적용) ○ 일시적 철거비용 담보(동일구내 적용)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담보 ○ 총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금액한도 ○ 자기부담금 : 한사고당 1,000,000원 ○ 기초공제 특별약관 ○ 대인대물 1사고당 일괄 3억원 ○ 자기부담금 : 한사고당 100,000원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플러스연구 활동단체상 해보험	2022-03-14 2023-03-14	12.7	348	4,449	0	0	0	0	연구원
2022	현대단체상 해보험	2022-05-01 2023-05-01	1.71	10,725	18,356	6	463	0	0	학생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장의비	10,000	10,000	
의료실비	100,000	100,000	
입원급여	50	50	4일 이상, 30일 한도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57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3.11	15:30~15:50	11	
교직원,학생(온라인교육)	10.28~11.7	10분	739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소방합동훈련	- 생활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화재대피 훈련 실시 - 대학 코로나-19로 인한 영상 합동(소방서)훈련 실시 - 지휘관 용인보정119안전센터 김기훈 소방사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1회 정기적인 소방합동훈련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교직원	5월	1	전체대상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소방합동훈련	- 화재 및 지진 재난 대응 훈련 수행 - 화재 발생시 신고 및 대피요령, 자위소방대 화재 진압 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1회 정기적인 훈련 실시

2.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주관부서
팀원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30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 2022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 미 실시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 미 실시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023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 미 실시			
교직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교육 미 실시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협업근로자의 경우 현장 안전교육 진행
	구성원에게 수시로 공문안내

3.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3	
팀장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451	협조부서
팀장	SW융합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141	
팀장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781	
팀장	일반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031-8005-2202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신규 연구실안전 교육	1	1,178	-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연구실안전 교육	2	4,79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신규 연구실안전교육	1	1,200	-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	2	4,80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오프라인 교육 실시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팀장	인권센터	031-8005-2554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031-8005-2533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5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원)
학생	04.12.~12.31.	16시간 23분	9,453	1,500,000
교직원	04.12.~12.31.	2시간 23분	2,054	4,675,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특강 '가려진 일상 속 폭력'
학생	장애대학(원)생 일반·전문도우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1학기 학군사관후보생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성폭력 예방 특강 '달라진 사회,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기'
학생	노동인권강좌 수강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성인초기 정신건강의 이해 수강생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2학기 학군사관후보생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성폭력 예방 특강 '편견과 혐오에 대한 이해'
학생	2021-2 폭력예방교육(교직이수자)
학생/교직원	2021 인권/성평등 예방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원)
학생	특강	6	14,573	3,000,000
학생	이러닝(인권/성평등 교육)	1	14,573	-
교직원	통합교육	2	1,986	2,000,000
교직원	이러닝(인권/성평등 교육)	1	1,986	4,675,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특강
학생	학교실습생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사범대)	성인지 교육
학생(학군단)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	인권/성평등 이러닝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교직원	인권/성평등 이러닝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교직원(고위직)-신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연간 2회)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 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용인소방서	031-8021-0400	재난대응과
보정119안전센터	031-8021-0579	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용인지사	031-80347666	기술점검부
한국가스안전공사(동부)	031-798-0019	응급처치시설보완
한국전력서용인지사	031-8065-7267	전력공급부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황실(전화번호)	건물명	비 고
통합상황실	031-8005-2858	법학관/대학원동 1층	사고 전분야

□ 감염병 확산

-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질병관리청	1339	
분당서울대병원	031-787-3036	응급실
수지구보건소	031-324-8451	보건행정과

☐ **범죄**

-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전화번호)	비 고
경찰서	112	
법무부 스마일센터	02-333-1295 031-235-1295	
검찰청	국번없이 1301	
경찰청	국번없이 182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577-1295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031-215-1117	

☐ **비상사태**

-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전화번호)	비 고
국방부	02-1577-9090	
55사단	031-333-0765	
교육부	044-203-6191	
용인서부경찰서	031-8021-8342	
수지구대	031-262-0112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1. 재난	재난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학생팀	031-8005-2081	주관부서
		팀원	학생팀	031-8005-2086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협조부서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협조부서
		팀장	학사팀	031-8005-2051	
		팀원	학사팀	031-8005-2057	협조부서
	② 교육시설 안전 사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협조부서
	③ 연구실 안전 사고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3	
		팀장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451	협조부서
		팀장	SW 융합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141	
		팀장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031-8005-3781	
		팀장	일반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031-8005-2202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2	협조부서
		소장	대학진료소	031-8005-2420	
		팀원	대학진료소	031-8005-2422	협조부서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15	협조부서
		팀장	학생팀	031-8005-2081	
		팀원	학생팀	031-8005-2085	협조부서
	② 성범죄	팀장	인권센터	031-8005-2554	주관부서
		팀원	인권센터	031-8005-2533	협조부서
		팀장	총무인사팀	031-8005-2111	
		팀원	총무인사팀	031-8005-2122	협조부서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팀장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주관부서
		팀원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31	협조부서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협조부서
	② 중대재해	팀장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58	주관부서
		팀원	중대재해관리팀	031-8005-2131	협조부서
		팀장	안전관리팀	031-8005-2130	
		팀원	안전관리팀	031-8005-2131	협조부서
6. 기타 비상사태	① 사이버 위기	팀장	정보인프라팀	031-8005-2320	주관부서
		팀원	정보인프라팀	031-8005-2324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0	0	0	1	0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19.4	0	19.4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0	0	0	0	1	0.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27.7	5.5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126	89	21	26	42	60.8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126	89	21	26	42	60.8
			계	126	89	21	26	42	60.8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8	2	4	4	6	4.8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8	2	4	4	6	4.8
			계	8	2	4	4	6	4.8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0	0	15	96	5991	1220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② 성범죄	발생건 수	7	10	3	3	7	6	
		피해자 수	7	10	3	3	7	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비상사태	① 사이버 대응	발생건수	469	436	268	139	358	334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태풍 링링 피해복구 사업		19.4	15	34.4	
		계		19.4	15	34.4	
	② 사회재난	소방시설물정밀점검	24	23	24	71	
		소방시설 개선 및보수					
		소화기 구입	17.8	26	20	63.8	
		공조기 필터 세정	5	10.9	12	27.9	
		공조기 필터 구매	4.3	4.4	4.5	13.2	
		계	51.1	64.3	60.5	175.9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차선도색 및 도로개보수공사	10	25		35	
		대학현장실습안전공제	0.8	1		1.8	
		계	10.8	26	0	36.8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각 건물 누수 방수공사	75	70		145	
		교육시설 안전 인증		25		25	22~25년까지 연차별 추진 예정
		기계설비성능점검		15.5	34.9	50.4	
		계	75	110.5	34.9	220.4	
	③ 연구실 안전사고	연구실안전관리비	187.4	182.7	633	1,003.1	
		계	187.4	182.7	633	1003.1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246	50	50	346	
		계	246	50	50	346	
4. 범죄	② 성범죄	예방교육 특강	1.5	1.8	4	7.3	
		예방교육(이러닝)	4.7	4.7	4.7	14.1	
		계	6.2	6.5	8.7	21.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교내육상 점검사다리	13			13	
		안전망설치공사					
		재해예방 안전관리비			20	20	
		계	13		20	33	
	② 중대재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비			50	50	
		-					
6. 기타 비상사태	① 사이버 대응	보안관제 서비스	0	0	0	0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1.7	4.3	4.7	20.7	
		계	11.7	4.3	4.7	20.7	